

"정령은 깨끗한 나의 모습이며, 정직한 우리의 약속입니다."



법 무 부



수신자 **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(손연우 간사)**
(경유)

제목 **G20국제민중회의 해외 초청인사 입국불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**

1. 국제연대 2010-1201(2010.12.6)호와 관련입니다.
2. 위 호와 관련하여 귀 단체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.

○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,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허가는 별개의 처분입니다. 따라서 외국인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증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○ 또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인터뷰실 및 출국대기실에는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관(또는 영사관) 전화번호도 비치되어 있어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, 출국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의 소란 등으로 공항보안요원의 안내를 받아 출국한 바 있습니다. 끝.

법 무 부



출입국관리수사 **박동철**

서기관

이우준

과장

신림 12/17

김종호

협조자

시행 출입국심사과-30403 (2010. 12. 17.) 접수

우 427-705 경기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8층

/ <http://www.moj.go.kr>

전화 02-500-9118

전송 02-500-9128

/ pd6062@moj.go.kr

/ 비공개(2)

"녹색은 생활이다"